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31

대 전 고 등 법 원

청 주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청주)2016누102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91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9.
판 결 선 고	2016. 1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9,718,700원, 지방교육세 10,209,610원, 농어촌특별세 5,485,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3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5,485,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6면 제18 내지 20행의 "어렵고,...없는 이상,"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어렵다(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가 직접 사용 범위에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갑 제1, 11, 12, 24호증, 을 제4, 2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5.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일부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자금대출 감소로 공사 진행을 중단한 사실, 원고는 건축허가취소에 관한 청문절차에서 2013. 3. 22. '경영상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신축자금을 신청하고 있는 중으로 2013. 4. 30. 실제 착공을 하여 2013. 12. 30. 사용승인을 받을 예정이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허가취소가 보류된 사실, 원고는 2013. 3. 27.경 설계감리비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무렵 공사를 재개하여 2013. 10.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31

는바, 원고가 청문절차 의견서에서 밝힌 공사 소요기간(8개월) 및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소요기간(2013. 5. 8.부터 2013. 10. 7.까지 약 5개월)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중단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더라면 그로부터 2년 내에 충분히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공사 중단의 원인이 된 자금사정 문제는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에서 일부 공사를 한 사실만으로 그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즉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나. 제8면 제11행의 "(취득세 109,718,700원×20/100)"을 "(이 사건 처분의 취득세 중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76,225,310원×20/100)"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귀섭

판사 김홍섭

판사 류희상